

1999. 12. 21  
제91회 정기회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1999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9년 8월 31일
- 나. 제출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 1999년 11월 3일
- 라. 상정일자 : 제91회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9. 12. 15)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김 범 남)

### ○ 결산 총규모

세입예산액 870억 4,225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44억 7,403만 3천원이고, 세출예산현액 1,139억 1,533만 8천원에 대해 749억 4,470만 6천원이 집행되었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395억 2,932만 7천원임

### ○ 일반회계 결산

• 세입예산액은 761억 6,413만원이며 실제수납 액은 871억 902만 2천원이고, 세출예산현액 867억 1,149만 8천원에 대해 692억 9,828만 4천원이 집행되었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78억 1,073만 8천원으로 그 내역은,

- 명시이월액	54억 7,422만 6천원
- 사고이월액	12억 2,994만 7천원
- 계속비이월액	56억 988만 7천원
- 보조금집행잔액	3억 5,773만 5천원
- 순세계잉여금	51억 3,894만 3천원

### ○ 특별회계 결산

• 의료보호 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08억 7,812만 1천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273억 6,501만 1천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272억 384만 1천원에 대하여 56억 4,642만 2천원이 집행되었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17억 1,858만 9천원으로 그 내역은,

- 명시이월액	12억 6,011만 5천원
- 계속비이월액	198억 2,560만 5천원
- 보조금 잔액	235만 2천원
- 순세계잉여금	6억 3,051만 7천원임.

### ○ 기금 및 채권·채무결산

• 97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2억 6,664만 9천원이었으며 98년도에 3억 8,407만 6천원이 증액되어 98년도말 현재액은 16억 5,072만 5천원임.

- 9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447만 5천원이었으며, 98년도에 423만 5천원이 상환소멸되어 97년도말 현재액은 4,024만원임.
- 97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9억 1,129만 4천원이었으나 98년도에 3억 8,174만 1천원이 감소하여 98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5억 2,955만 3천원임.

○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 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651억 5,398만 3천원, 건물이 45억 4,580만 2천원, 기타 1,775만원으로 총 2,697억 1753만 5천원임.
- 98년도말 물품현재액은 26억 1,690만 1천원임.

3. 결산검사결과 조치내역 보고요지 : 별첨1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별첨2

5. 질의·답변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 검토자료

일련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주 관 부 서
1	○ 세입결산의 중요한 지표인 실제 수납비율이 96년부터 매년 조금씩 하락추세를 나타내며 미수납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가급적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세입징수관리대책 강구	○ 장기적인 지역경제 침체로 납세의식 저조와 부도기업의 증가 등으로 납세율 저하 및 체납액이 증가하고 체납자의 폐업, 무단전출 등으로 실질적인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과세자원의 철저한 조사와 납세고지서의 위탁송달 정착 및 공평·합리세정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으로 자치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지방세과
2	○ 97년도 말부터 시작된 경제불황에 따른 영향으로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으나 특히 목적세인 사업소세와 체납세 징수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새로운 세원발굴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함께 체납세 징수노력이 요구됨	○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기기간 설정운영으로 고액 고질체납자의 행정조치 강화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화하고 법인실태 조사 분석 및 과세 기초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음	지방세과
3	○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가 대부분 법정기한 경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징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요구	○ 소멸시효 완성 체납자의 대부분이 무재산 및 행불로 인한 압류물건 미확보로 전국 재산조회 및 주민전산망을 통한 지속적인 추적관리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 강구로 불납결손액의 최소화 강구	지방세과

일련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주 관 부 서
4	<p>○ 세외수입 중 과태료 관련 항목의 미수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 과태료, 자동차 보험과태료 등으로 납세의무자들이 일정 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사료되니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의 조회를 활용하여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징수노력이 요구</p>	<p>○ 체납액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강제금 체납액 : 35건 97,671천원</li> <li>- 이행강제금 징수액 : 13건 21,067천원</li> <li>- 99. 7. 7일 전국 재산조회의뢰 : 17건 53,954천원</li> <li>- 99.9.21일 부동산등기압류 : 15건 66,490천원</li> </ul> <p>○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등기압류중 98년도는 아래와 같은 고액체납액(전체 체납액의 48%)이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가 있었으나 민사소송법상 경매로 인한 체납액 배상시 일반채권에 분류되어 안분배당되므로 부동산은 압류 확보되었으나 징수치 못함</li> </ul> <p>체납자 : 98-12-3 부성시트 30,007천원           98-11-1 박영우 15,985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부과자료의 47%가 과태료 5천원으로 채권확보가 곤란</li> </ul> <p>○ 향후 조치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년 12월중에 전국 재산조회 의뢰 및 금융자산 등의 조회의뢰를 실시후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강력 징수</li> </ul>	<p>건 축 과 교 통 과 지방세과</p>

일련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주 관 서																										
5	<p>○ 사회단체 보조금은 주민 자치 역량을 배양하는 원동력으로 정액보조단체의 경우 연간 기준액의 77%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임의보조단체는 11.8%만 지원하고 있어 새롭게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서구발전을 비롯한 공익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봄.</p>	<p>○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data-bbox="913 623 1711 1187"> <thead> <tr> <th rowspan="2">단체명</th> <th rowspan="2">연 간 기준액</th> <th rowspan="2">예산액</th> <th colspan="2">지 원</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단체수</th> <th>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461,440</td> <td>190,260</td> <td>22개</td> <td>170,780</td> <td></td> </tr> <tr> <td>정 액 보조단체</td> <td>178,440</td> <td>137,520</td> <td>11개</td> <td>137,520</td> <td></td> </tr> <tr> <td>임 의 보조단체</td> <td>283,000</td> <td>52,740</td> <td>11개</td> <td>33,260</td> <td></td> </tr> </tbody> </table> <p>○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 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액보조단체는 대상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임의보조단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사회단체 보호육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p>	단체명	연 간 기준액	예산액	지 원		비 고	단체수	지원액	합 계	461,440	190,260	22개	170,780		정 액 보조단체	178,440	137,520	11개	137,520		임 의 보조단체	283,000	52,740	11개	33,260		기획감사실
단체명	연 간 기준액	예산액				지 원			비 고																				
			단체수	지원액																									
합 계	461,440	190,260	22개	170,780																									
정 액 보조단체	178,440	137,520	11개	137,520																									
임 의 보조단체	283,000	52,740	11개	33,260																									
6	<p>○ 예산의 전용, 이체에 있어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98년도 조직개편후 4차례에 걸쳐 예산을 이체사용하는 것은 예산을 적기 집행하는데 다소 효율적이지</p>	<p>○ 제1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집행시기에 맞추어 집행소요 부족액을 사전에 방지코자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총 4차에 걸쳐 이체하였음</p>	기획감사실																										

일련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주 관 부 서
7	<p>○ 쓰레기 처리비용에 있어 전체 예산대비 청소관리 비용은 14.5%, 외부용역 대행사업비는 1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쓰레기 처리비용과 외부 청소용역 대행비용에 대해 새로운 원가산정과 원가절감요인의 집중분석이 필요함</p>	<p>○ 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쓰레기 처리는 가정청소 쓰레기 수집·운반업무는 대행회사가 수행하며 가로청소는 가로환경미화원이 전담</li> </ul> <p>○ 대행사업비중 인건비가 73%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화원의 인건비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지급기준을 마련치 않고 매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집행</p> <p>○ 우리 구의 경우 신도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호·풍암·상무지구의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용역을 의뢰하여 원가선정을 실시할 계획임</p>	청소행정과
8	<p>○ 쓰레기 종량제의 전면실시로 쓰레기량의 전반적인 감소와 쓰레기 수거시 자동화의 확대 등으로 원가절감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비용이 상승되고 있음</p>	<p>○ 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레기 반입량 및 반입료 지급</li> <li>· 97년 : 60,107톤(반입료 656,982천원)</li> <li>· 98년 : 56,824톤(반입료 768,259천원)</li> <li>- 대행사업비 예산현황</li> <li>· 97년 : 4,757,845천원</li> <li>· 98년 : 5,188.102천원</li> </ul> <p>○ 쓰레기 반입량은 연간 5.5% 감소하였으나 98년 8월 쓰레기 반입료는 16.9%가 인상되었음 (톤당 9,700→13,520원)</p> <p>○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 제고를 위해 관급봉투 가격 현실화를 통하여 2003년까지 자립도 100%를 달성하여 대행회사로 관급봉투 판매를 위탁하여 대행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임</p>	청소행정과

일련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주 관 부 서
9	<p>○ 1998 회계년도 말 현재 청소용역 대행업체인 (주)명성환경의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추계액이 약 23~25억으로 (주)명성환경과 계약해지시 똑같이 적용되는 금액으로 구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p>	<p>○ 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명성환경 인력 및 장비</li> <li>· 인력 : 160명(미화원 105, 운전원 41, 정비원 5, 사무원 9)</li> <li>· 장비 : 40대(청소차 38 ,버스1, 지도차 1대)</li> </ul> <p>○ 매년 발생하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은 당해 연도에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퇴직금을 적립하기에는 구재정에 부담이 큼</p> <p>○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업체와 계약시 서구 전구간에 대한 청소업무 대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3-4개 업체가 권역별로 청소 대행업무 수행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인력과 장비를 승계토록 유도하여 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대행계약을 체결할 것임</p> <p>○ 일시적 퇴직금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건의하겠으나 예산의 사용범위가 1년으로 계속 관리가 곤란함</p>	청소행정과

일련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주 관 부 서																	
10	<p>○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전액 의료보호 대불금 2종(한시, 자활)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일부(본인부담금)를 대납한 경우로 미수납액이 가족에 승계됨을 알리고 지속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p>	<p>○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data-bbox="909 587 1696 839"> <thead> <tr> <th rowspan="2">대불 금액</th> <th colspan="3">징 수 액</th> <th rowspan="2">결손 처분</th> <th rowspan="2">체납액</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소계</th> <th>과년도</th> <th>현년도</th> </tr> </thead> <tbody> <tr> <td>56,605</td> <td>11,354</td> <td>8,766</td> <td>2,588</td> <td>7,628</td> <td>37,623</td> <td></td> </tr> </tbody> </table> <p>○ 의료보호대상자의 장기입원과 생계가 어려워 대불금 미상환자는 증가</p> <p>○ 대불금 체납액 징수반 편성운영 - 운영시기 : 년 2회(상·하반기) - 반 편 성 : 2개 반 4명 - 징수방법 · 체납자 호별 방문 자진납부 유도 (가족에 승계됨을 주지) · 재산조회를 통한 행정상 강행조치 · 행불,시효소멸,극빈자 결손처분</p>	대불 금액	징 수 액			결손 처분	체납액	비 고	소계	과년도	현년도	56,605	11,354	8,766	2,588	7,628	37,623		사회복지과
대불 금액	징 수 액			결손 처분	체납액	비 고														
	소계	과년도	현년도																	
56,605	11,354	8,766	2,588	7,628	37,623															
11	<p>○ 9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주차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시기까지 방치하지 않고 지방세과와 협의 자동차세 고지서 함께 통지하는 등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p>	<p>○ 주차위반 과태료는 체납시 가산금이나 벌점 등의 제재규정이 없어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p> <p>○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통지할 경우 서구 등록차량에 한하여 통지하여야 하나 서구등록차량의 고지서만 따로 출력할 수 없어 총체납 고지서를 출력한 후 따로 구분작업을 하여야 함으로 실시가 어려움</p>	교통과 지방세과																	

일련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주 관 부 서
12	<p>○ 기금관리에 있어 노인복지기금은 관내 100여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가 요망</p>	<p>○ 주차위반 과태료는 부과에서 4차 독촉까지 5회에 걸쳐 납부독려를 지속 실시하여 자진 납부 유도</p> <p>○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 후 압류 이전까지 자동차 소유권 변동을 수시 확인하여 물건을 대체압류</p> <p>○ 주차위반 과태료에 가산금 및 벌점 등의 제재 규정을 시에 적극 건의</p> <p>○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기 : 99. 10. 15 - 10. 20일</li> <li>- 대 상 : 관내 경로당 104개소</li> <li>- 소요예산 : 275개 20,895천원</li> <li>- 운동기구 보급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40명 이상 49개소 : 147개</li> <li>· 이용자 40명 미만 55개소 : 110개</li> </ul> </li> <li>- 운동기구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런닝머신 : 49개</li> <li>· 벨트 마사지 : 49개</li> <li>· 트위스트 원반 : 49개</li> <li>· 3기능 런닝머신 : 55개</li> <li>· 체 중 계 : 55개</li> </ul> </li> </ul> <p>○ 노인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추진</p>	<p>교 통 과 지방세과</p> <p>사회복지과</p>

<별첨2>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최재춘)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99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1998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개요

당초 일반회계는 1997년도 예산보다 5,163,822천원 증가된 61,476,404천원으로, 특별회계는 3,622,075천원 감소된 10,180,22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최종예산은 일반회계 76,164,130천원 특별회계 10,878,121천원이 되어 전년도보다 일반회계는 7.98%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35.46%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최종예산의 규모는 87,042,25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0.4%가 감소되었습니다.

연도별 재정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증감 비율
			당초예산	추경 예산		최종예산	
				제1회	제2회		
일반회계	70,872,758	70,537,507	61,476,404	6,560,803	8,126,923	76,164,130	7.98
특별회계	15,980,369	16,855,036	10,180,222	976,403	△ 278,504	10,878,121	△35.46
합 계	86,853,127	87,392,543	71,656,626	7,537,206	7,848,419	87,042,251	△ 0.40

\* 추경예산의 경우는 기정예산의 증감된 예산임

○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내용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세계잉여금의 세입이입 등으로 예산액의 114.4%인 87,109,022천원이 수납되어 예산상 세입은 10,944,892천원 초과하였고, 세출결산액은 69,298,284천원으로 17,810,738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2,671,795천원을 제외하면 순잉여금은 5,138,94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

(단위 : 천원)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발 생	결 산			
	세 입 결 산	77,395,640	81,574,817	87,109,022
	세 출 결 산	64,202,210	64,760,126	69,298,284
	세 계 잉 여 금	13,193,430	16,814,691	17,810,738
	이 월	10,223,273	11,154,263	12,671,795
순 잉 여 금		2,970,157	5,66,428	5,138,943
처 리	채 무 상 환	-	-	-
	익 년 도 추 경 재 원	470,157	3,660,428	2,138,943
	익 년 도 세 입 이 입	2,500,000	2,000,000	3,000,000
	기 타		-	-

\* 세계잉여금 : 세입전망 등을 고려 '98년의 추경 또는 '98년의 세입재원으로 처리.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7,365,011천원, 세출결산액은 5,646,422천원으로 21,718,589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21,088,072천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630,517천원입니다.

###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

(단위 : 천원)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발	세 입 결 산	15,743,520	21,462,401	27,365,011
	세 출 결 산	9,077,315	4,447,887	5,646,422
	세 계 잉 여 금	6,666,205	17,014,514	21,718,589
생	이 월	5,627,049	16,326,121	21,088,072
	순 잉 여 금	1,039,156	688,393	630,517
처	채 무 상 환	-	-	
	익 년 도 추 경 재 원	737,392	141,963	180,517
	익 년 도 세 입 이 입	300,000	545,267	450,000
리	기 타	1,764	1,163	

\* 세계잉여금의 세입전망 등을 고려 '99년의 추정 또는 '98년의 세입재원으로 처리

#### ○ 예비비 결산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세출예산액의 2.15% 해당하는 1,640,694천원의 예산 중에서 163,60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61,947천원은 지출하고 나머지는 전액불용 처리하였습니다.

#### ◎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재정운용

첫째, 1998년도 예산운용 전반에 관한 전반에 관한 의견입니다.

1998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살펴보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었으나 일부사업에서 사업계획과 사업소요 예측의 부정확 등으로 인해 사업의 지연·취소, 이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사업, 시설물 증축 및 개보수사업 등 일부주요사업에서 재원 조달과 사업추진에 관한 당해 사업의 차질로, 재원의 死藏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당면한 상황변동의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사전점검을 통해 재원을 배분하고 집행단계에서는 배분된 재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수추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7,616,413천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87,109,022천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1.43%에 해당하는 10,944,892천원의 초과수납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97년도의 15.65%에 비하면 오차폭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수초과수납액 10,944,892천원은 지방세에서 197,879천원과 세외수입에 10,992,934천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308,000천원이 초과 수납된 것이며, 반면 보조금에서는 553,922천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지방세 초과수납액 197,879천원은 예산액 76,164,130천원의 0.26%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형상 전년도 0.72%에 비하면 오차 폭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세수추계의 정확

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1998년도 세외수입수납액은 28,565,457천원으로서 예산액 17,572,522 천원보다 10,992,932천원이 초과 수납되어 예산액 대비 초과수납비율이 62.56%입니다. 이는 사고·명시이월이 10,547,367천원이며 나머지는 잡수입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므로 사고·명시이월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일반회계 미수납액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90,203,309천원 중 수납액은 87,109,022천원이며, 수납되지 않은 액수는 징수결정액의 3.43%인 3,094,287천원입니다. 이 가운데 익년도 이월액은 2,996,396천원으로서 이는 징수결정액의 3.32%에 해당하며 '97년보다는 1.04% 증가한 것이며, 최근 3년간 평균율의 2.5% 보다 0.93% 증가 되었습니다. 한편, 불납결손액은 97,889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1%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97년도에 비하여 0.06%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수납액의 사유는 주로 납세자의 무재력이나 거소불명, 고질체납자와의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현상은 '97년도부터 시작된 경제불황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설득 및 강제징수 등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체납액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세수증대를 위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도 한층 강화하였으면 합니다. 9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소멸, 또는 면허취소, 업체부도 등으로 97,889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결손대상이 되는 미수납액이 발생시는 가감히 결손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도별 일반회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96년도	97년도	98년도	
예 산 액		70,872,758	70,537,507	76,164,130	
징수결정액		78,975,678	83,515,198	90,203,309	
수 납 액		77,395,640	81,574,817	87,109,022	
미 수 납 액 (징수결정액에 대한 비율)		1,580,038 (2.00%)	1,940,381 (2.32%)	3,094,287 (3.43%)	
미 수 납 처 리	익 년 도 이 월 (징수결정액에 대한 비율)		1,489,844 (1.89%)	1,903,242 (2.28%)	2,996,396 (3.32%)
	사 유 별	징수유예	130,679		10,570
		거소불명	295,002	248,643	446,176
		무 재산	181,143	100,781	319,288
		고질적 체납	250,056	745,130	650,933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632,963	808,688	1,569,429
	불 납 결 손 액 (징수결정액에 대한 비율)		90,194 (0.11%)	37,139 (0.04%)	97,889 (0.05%)
	사 유 별	무 재산		2,749	2,960
		거 소 불 명	35,548		11,061
		시 효 완 성	54,646	34,390	22,779
기 타				61,089	

넷째,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8년도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액은 5,400천원으로서 97년 67,449천원에 비해 크게 감소된 것은 예산편성시 과거의 예산성립 집행결과를 면밀히 검토반영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예측되는 예산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회계연도 중에 예산편성 외의 사유로 지출을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및 직제 변동으로 389,469천원이었습니다.

### 연도별 이·전용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96년도			97년도			98년도		
	이용	전용	이체	이용	전용	이체	이용	전용	이체
이·전용액 (예산현액대비)		22,780 (0.03)			67,449 (0.08)			5,400 (0.006)	389,469 (0.45)
요인별	인건비 부족				1,049				
	공공요금 부족							459	
	사업계획 변경		22,780		66,400			2,625	
	기 타							2,326	389,469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출예산 이월금액은 일반회계가 예산현액의 14.20%인 12,314,060천원, 특별회계가 77.5%인 21,085,720천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전체 예산현액의 29.32%에 해당하는 33,399,780천원이 연도 내에 집행을 마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이월의 최근 추세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96년 12.98%에서 '97년 13.08%, 98년 14.20%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절대액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96년 35.14%, '97년 72.62%, 98년에는 77.5%로 연이어 대폭적인 증가율과 금액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월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을 보면 절대공기 부족, 설계변경, 용지매입 지연 등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나, 이처럼 이월액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급한 다른 부문의 투자를 지연시키게 되고, 또 이월에 따른 공기차질을 만회하려고 졸속, 부실 공사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발주 등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이월사업의 상당부분이 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사업, 시설물증축 및 개·보수사업 등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차기 이월공사 시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전년도 이월분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 편성함으로써 잉여재원을 여타 중요한 분야에 배정하는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개선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도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96년도			'97년도			'98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대비율	이월액	예산현액	대비율	이월액	예산현액	대비율
합계	15,723,467	93,788,141	21.17	26,873,088	103,116,332	32.80	33,399,780	113,915,339	29.32
일반회계	10,096,418	77,775,382	12.98	10,547,368	80,633,925	13.08	12,314,059	86,711,498	14.20
특별회계	5,627,049	16,012,759	35.14	16,325,720	22,482,407	72.62	21,085,720	27,203,841	77.5

\* 대비율은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의 백분율을 말함

다음은 예산의 불용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 규모는 예산현액 대비 5.58%인 5,099,154천원이며, 97년의 경우(6.60%인 5,326,441천원)보다도 예산현액 대비율과 절대액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의 불용은 주로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각 소관 부서가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불용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예산절감에 기인하였으나, 예산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의 비중이 높다고 보아지므로 불용액 발생을 고려하고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의 예산투입은 지양하여야 하겠으며,

불용액이 특별한 사유없이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는 항목의 분기별 집행실적을 보았을 때 연도말에 집중되어 발생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체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므로 예산편성시 적정을 기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년도별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불용액	원 인 별					
		계획변경 취소	미 집행 사유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98	5,099,154	133,410	304,710	1,448,016	1,378,194	357,735	1,477,089
		2.62%	5.98%	28.39%	27.03%	7.03%	28%
'97	5,326,441	49,161	1,242,543	181,107	2,476,553	606,896	770,181
		0.92%	23.33%	3.40%	46.50%	11.39%	14.46%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